

국가품질명장 증서

제

호



국가품질명장 증서

부문:

소속:

성명:

귀하는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품질경영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장근로자의 귀감이 되어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 「산업표준화법」 제31조의4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"국가품질명장"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대 통 령

직 인

이 증서를 국가품질명장증부에 기입함.

산업통상부장관

직 인